

제 호

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
2. 소 재 지:

3. 대 표 자:

(생년월일:

)

4. 주 소:

위 기관을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원자력안전위원회

직인